

대한민국 99%의 임! 중소기업

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이해

2019





목 차

1

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

2

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내용

3

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I.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

공공기관

중소기업제품
기술개발제품
여성기업제품
장애인기업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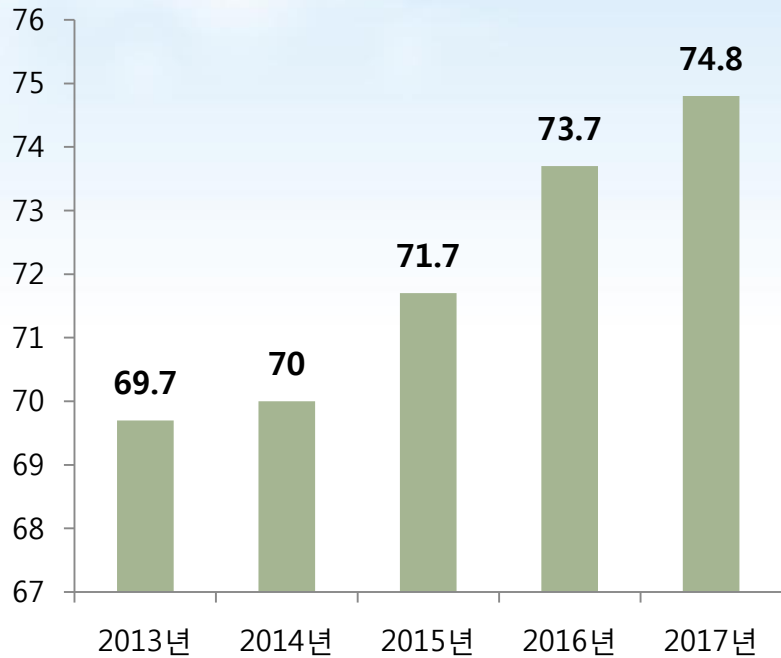
구매계획
구매실적

※ 국고보조금 100억원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 (판로지원법 제4조 제3항, 2017.9.22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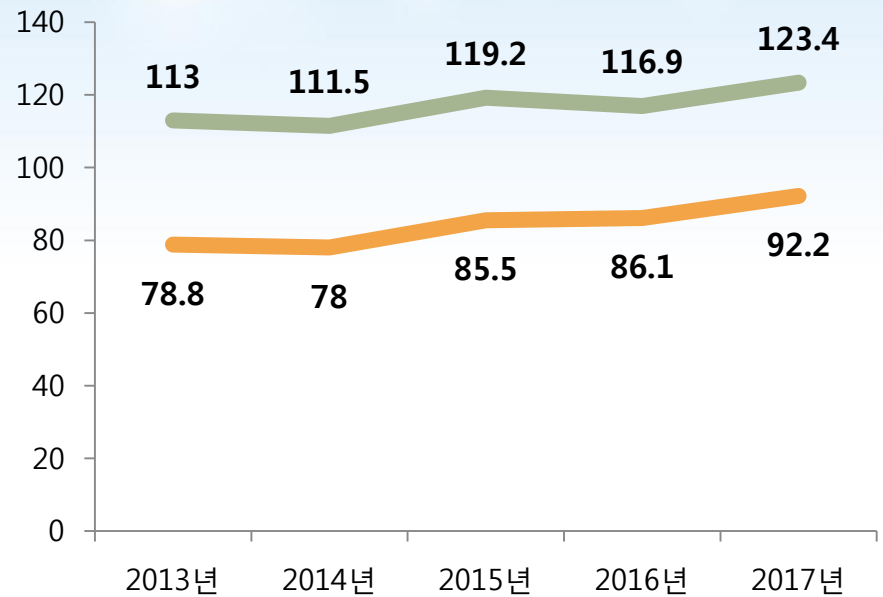
I.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

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추이

중기제품 구매비율 (%)



공공기관 총구매... 중기제품 구매금액(조원)

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내용

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

■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

-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판로지원법)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
- 주요내용 :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(물품·공사·용역) 구매총액의 50% 이상을 중기제품으로 의무구매

☞ 중소기업제품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

- ▶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여부와는 무관
- ▶ 「판로지원법」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서 구매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에 포함

■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

- 법적근거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- 주요내용 :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구매액의 5%, 공사의 3%, 용역의 5%를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

☞ 여성기업제품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

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: 당해년도 총구매액의 1%이상 의무구매

- 법적근거 : 「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」 제9조의 2

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내용

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

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

- 법적근거 : 「판로지원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- 주요내용 :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%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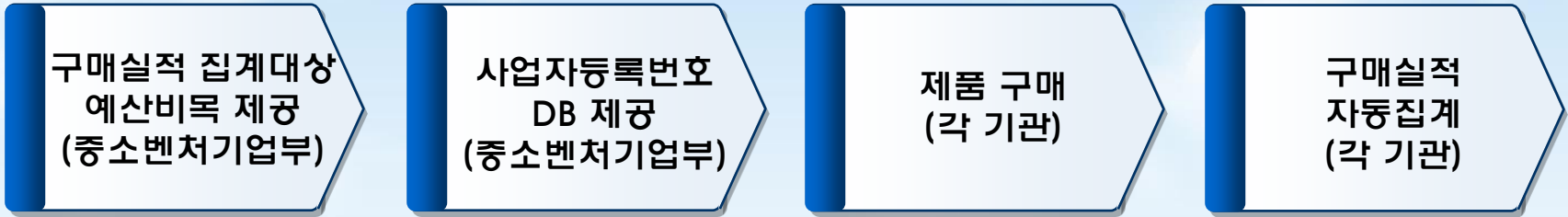
* 「판로지원법」 시행령 개정으로 구매비율 10%달성이 권장에서 의무로 강화

☞ 기술개발제품 유형(16종)

- ① 성능인증 : 「판로지원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- ② 우수조달물품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
- ③ NEP :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- ④ NET : 인증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
- ⑤ GS :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
- ⑥ 구매조건부 R&D성공제품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R&D(공공부문)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⑦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 2에 의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
- ⑧ 녹색인증 대상제품 : 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녹색기술을 상용화한 제품(친환경인증, GR, 환경표지는 미포함)
- ⑨ 중소기업 융·복합 기술개발제품 :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9조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융·복합 제품
- ⑩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: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융합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
- ⑪ 개발선정품 지정제품 :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
- ⑫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로 기술개발에 성공한제품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⑬ ICT 융합품질 인증제품 :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ICT 제품
- ⑭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민관공동투자(공공부문)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⑮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: 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(단,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)
- ⑮ GD(우수산업 디자인상품) :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중소기업제품 등 구매실적 집계 프로세스



✓ 기술개발제품, 공사용자재 구매실적 집계

- 기술개발제품과 공사용자재 구매실적의 경우 자동집계가 되지 않아 구매건별로 구매실적을 수작업 집계
- 최상위기관과 소속기관에서 각각 당해기관의 구매실적을 누락없이 집계 및 입력
 - ※ 기술개발제품의 조달구매분 및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실적은 나라장터에서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
 - ※ 2017년도 총 공사규모가 1,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공사용자재 구매실적 제출 필요 (2018. 12월 대상기관 기통보)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중소기업제품 등 구매실적 집계방법

- (국가기관) 예산비목을 기준으로 제품(물품·공사·용역)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칭
- (지방자치단체) e-호조에서 품의등록 시 품의유형(11종) 중 물품구입, 공사, 용역, 수리·수선, 관급자재를 선택한 경우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칭
- (교육행정기관) 에듀파인에 원인행위 등록 시 선택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물품·공사·용역을 구분하고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칭
- (그외 공공기관) 물품·공사·용역 관련 예산비목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DB를 활용하여 구매실적 집계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실적 집계 기준

■ 대상비목(국가회계 d-Brain) 기준

- 운영비(목) : 일반수용비, 피복비, 유류비, 시설장비유지비, 재료비, 일반용역비, 관리용역비(이상 세목)
- 연구용역비(목) : 일반연구비, 정책연구비(이상 세목)
- 건설비(목) : 기본조사설계비, 실시설계비, 공사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(이상 세목)
- 유형자산(목) : 자산취득비(이상 세목)

✓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제외되는 항목

- ▶ 원유, 가스, 철, 펄프 등의 원자재 · 재료 구입금액
- ▶ 식대, 공공요금 및 제세,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 · 수당, 비정규직 인건비, 산하기관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 구매와 관련없는 항목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실적 집계 기준

■ 대금 지급대상 기준

대금지급대상이 중소기업자인가?

- ✓ 대기업 MRO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였더라도 대기업유통회사에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대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집계
- ✓ 대기업제품을 중소기업유통회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 대금 지급대상이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집계
- ✓ 비영리법인·단체(연구소·학교·단체 등)에서 구매한 금액은 대기업 등 구매실적으로 집계(중소기업 구매실적이 아님)
- ✓ 대기업과 계약체결후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집계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실적 집계 기준

- 실적 집계시점 기준

대금지급일 기준으로 구매실적 집계

- ✓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2019년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2019년 구매실적으로 집계
- ✓ 계속 용역·공사의 경우 계약일자·발주일자에 관계없이 대금지급일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구매실적으로 집계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실적 집계 기준

■ 조달구매/자체구매 구분 기준

- 조달구매 : 조달청 구매의뢰 건과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요구 건
- 자체구매 : 공공기관에서 직접 계약한 건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직접 입찰을 진행한 건
- ✓ 기관별 자체 입력한 조달구매분과 조달청이 제공한 조달구매분이 차이가 존재할 경우 사유서 요구
- ✓ 나라장터 이용시 최상위기관의 정확히 지정 등록
- ✓ 자체구매분이 과다 계상되어 총 구매실적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
- ✓ 조달구매 대금 代지급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실적 집계 기준

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입력 기준

- '17년도 총 공사규모가 1,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'18년도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실적 입력(2019년 4월 국무회의 및 국회보고)
-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실적은 공사실적이 아닌 물품 구매실적으로 포함
 - ※ 공사용자재 구매분을 물품구매실적으로 미입력시, 자재를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더라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누락되는 문제발생
- ✓ **중소기업제품(물품)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이행이 매우 중요**
- ☞ 의무적으로 직접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면 중기제품 구매실적 향상가능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계획 작성 기준

- 최상위기관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에 연간 구매계획 입력(소속기관 구매계획 포함)
- 입력대상 : 총 구매액, 중소기업제품 구매액, 기술개발제품 구매액, 여성기업제품 구매액,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,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등
- 법정구매비율(중소기업제품 50%, 기술개발제품 10%, 여성기업제품 5% 또는 3%, 장애인기업제품 1%) 보다 높게 구매목표 설정
 - ✓ 별도 협의를 통해 법정구매비율보다 낮게 설정 가능
- 2019년도 구매목표비율을 2018년 구매실적비율보다 상향 설정
 - ✓ 별도 협의를 통해 구매실적비율보다 낮게 설정 가능
-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55%이상을 상반기에 구매하도록 계획 수립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협이사례 1

전년도 총 구매예산 중 연구용역비, 위탁사업비, 정책홍보비 등 용역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89%를 차지하며, 이들 용역의 특성상 용역수행자가 국책연구기관, 정부출연기관, 한국언론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수행함.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%보다 낮게 설정하고 여성기업제품(용역) 구매목표비율을 5%보다 낮게 설정함.

협이사례 2

LNG 저장탱크와 초고압 가스배관 등의 대형 플랜트 건설공사(복합 면허 및 공사실적 보유 필수)가 총 구매금액의 59.9%를, 자회사(대기업)가 수행하는 경상 정비용역이 총 구매금액의 8.6%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기관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50%보다 낮게 설정함.

협이사례 3

기관의 업무특성상 방산물자를 주로 구매하고 방산물자 시장은 대기업이 대부분 생산하는 시장구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구매목표비율을 50%보다 낮게 설정함.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기한

■ 구매계획

- 최상위기관은 **2019년 1월 31일까지**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에 소속기관 구매계획을 포함하여 연간 구매계획을 월단위로 입력

■ 구매실적

- 매월 최상위기관이 소속기관의 구매실적을 포함한 기관별 구매실적을 **익월 10일까지**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에 입력
- ✓ 판로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매실적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**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**

III. 구매목표비율제도 세부 운영기준

집계 효율화 방안

- 대상 :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특별법인, 지방의료원

세부 계정과목별 물품 · 공사 · 용역 구분 기준 마련



물품 · 공사 · 용역 자동구분 시스템 구축



중소기업/여성기업/장애인기업 구매실적 자동 집계



감사합니다